

실업급여 핵심 요약!

- 출석하여 실업인정받는 경우 **실업인정신청서 작성** 하고 대기표를 뽑아 대기하세요.
- 방문 시 준비물: **신분증, 수첩(취업드림수첩)**

**오전에는 센터 방문 민원이 많아 담당자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.

1 구직활동 종류

1-1. 적극적인 구직활동

㉠ 구직활동사항

입사지원 방식	증빙 자료
• 방문 면접	채용공고 +수첩(P.10~15) 구직활동 내역 작성
• 지인소개 등 (채용공고가 없는 경우)	면접사실 확인서(별지)
• 고용24	고용24 구인정보 입사지원건 전산 확인 가능, 별도증빙 불필요
• 취업포털사이트 (예: 사람인, 잡코리아 등)	채용공고문 + 취업활동증명서
• 이메일 지원	채용공고문 + 보낸 편지함 캡처 (받는 사람 주소, 메일 보낸 날짜)
• 구인신문 (예: 교차로, 벚꽃시장 등)	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+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
• 채용기관 홈페이지	채용공고 +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*컴퓨터 화면상 시계·달력, 윈도우 작업 표시줄 등 활용, 입사지원일 증명 필수
• 우편·팩스	채용공고문 + 등기 영수증, 팩스 송신 확인
• 채용 관련 행사	채용박람회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

㉡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

구직활동 외	증빙 자료
• 직업훈련	훈련 등 수강증명서 + 출석부 * 실업인정기간 중 교육시간이 30시간 미만=구직활동 1회, 30시간 이상=최소의무횟수 인정
• 취업특강(온/오프) (총 3회만 인정)	(고용센터 주관) 별도증빙 불필요 (다른 기관) 수료증
• 단기/장기 집단	(고용센터 주관) 별도증빙 불필요 (다른 기관) 수료증
• 심리인정프로그램 (총 1회만 인정)	심리상담사 확인
• 직업심리검사 (총 1회만 인정)	직업심리검사 결과지(검사일자 표기)
•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	참여 확인 증빙자료
• 봉사활동	봉사활동 증명서 *만60세이상&장애인만 가능 (4시간 이상 1회 인정)
• 자영업준비활동	(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) 임대차 계약, 시장조사 등 증빙자료
• 예술안노무제공자 준비활동	해당 직종 재취업, 창업 활동 증빙자료

★60세이상과 장애인 유형은 구직 외 활동 횟수 제한 없음

1-2. 구직활동 인정 불가능한 사례

-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
- 현재 구인하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 지원
- 사업장에 전화나 문자로 단순 문의만 하는 경우
- 사업장 채용조건(경력, 필수자격증 등)과 수급자 구직신청 정보가 현저히 다른 경우
- 같은 날짜에 여러 건 수행한 구직활동은 1건만 인정
-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아닌 기간에 한 구직활동
- ※ 허위·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해당 회차 부지급 또는 전체 구직급여 부지급

2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온라인 전송

- 지정된 날짜에 미출석, 미전송 시 구직급여 소멸

출석형	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분증, 수첩 지참 후 본인 출석
온라인형	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국내에서 고용24(www.work24.go.kr) ▶ 로그인 ▶ 『실업인정 인터넷 신청』 ▶ 작성 제출 ▶ 당일 17시까지 전송(이후 시간 전송 불가)

★(주의) 모든 회차 구직활동 이행 내역은 필수

- 실업인정일 출석 의무 회차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X
- 착오로 불출석 시
 -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,
개인 착오 날짜 변경(1회만)
- 정당한 사유(면접, 입원, 경조사 등)로 불출석 시
 - 증빙자료 지참, 14일 이내 방문하여 날짜 변경

3 수급 중 모든 근로 소득 발생 사실 신고

-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, 임금,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,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 필수 신고

4 수급 중 취(창)업한 경우

⇒ 취(창)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 신청

- 제출서류: (취업 시 제출)실업인정 신청서
+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
- 제출방법: 온라인, 팩스 90508-8230-0127), 방문, 우편
- 신고기한: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(신청기간 도과 시 소멸)

5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 이내에 재 실업 시

-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센터 출석 신고
(7일초과시 도과일수만큼 구직급여 소멸)

⑥ 조기재취업수당

★(주의) 자영업자, 예술인·단기예술인, 노무(단기노무) 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, 개별연장급여, 훈련연장급여 대상 제외

- (대상) 실업의 신고일(수급자격 신청일)로부터 **14일이 지난 후** 소정급여일수의 **1/2 이상을 남은 상태**에서 재취업(사업 개시)하여 **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고용(사업 영위)**
 -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, 재취업한 날부터 1개월 단위 일용근로일수 10일 이상
 - 자영업(법인포함),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프리랜서) 등으로 영업·재취업 계획하고 있는 경우, 담당자와 미리 상담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

*절차 없이 사업 개시 시 조기수당 해당되지 않음
*보험설계사, 프리랜서, 학원강사, 채권추심원, 학습지교사,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포함
- (제외)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지급 제외
 - ①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
 - ②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사업주와 합병·분할 관계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
 - ③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
 - ④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
 - ⑤ 재취업일 전날 기준,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/2 미만
 - ⑥ 재취업일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내(이전 재취업일(사업 시작일)과 새로 재취업일(사업 시작일) 사이 간격)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- ⑦ 재취업 후 12개월 내 하루라도 고용(사업영위) 기간 단절
 -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 영위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 개시
 -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
 -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('24년 고시 임금액: 월 5,740,000원)
 - ⑪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공무원 임용(다만,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)
- (청구방법) 재취업일(사업개시일)로부터 **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**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팩스,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(모바일 앱 신청 불가)
 - *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**요건 충족 시** 재취업일(사업개시일)부터 신청 가능

⑦ 고용24(www.work24.go.kr) 활용

- **고용24 구직신청서 희망 구직 조건 수정하기**
고용24(www.work24.go.kr) ▶ 로그인 ▶ 채용정보 ▶ 구직신청 ▶ 구직신청 ▶ 구직인증번호 클릭 ▶ 희망조건(직종, 지역 등) 수정 ▶ 다음 ▶ 수정
 - **고용24 채용정보에 고용24로 입사지원 하기**
고용24(www.work24.go.kr) ▶ 로그인 ▶ 채용정보 ▶ 일자리 찾기 ▶ 구인정보 ▶ 원하는 채용정보 클릭
 - ▶ 공고에 나와있는 근무조건, 지원 자격 등 확인
 - ※지원 자격 미충족(예 요구 필수 경력, 자격증 유무 등) 시 인정 불가
 - ▶ 지원 서류 확인, 워크넷 입사지원 클릭(워크넷 입사지원 불가능인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X)
 - **고용24 온라인 특강**
고용24(www.work24.go.kr) ▶ 로그인 ▶ 실업급여 ▶ 실업인정 ▶ 온라인 취업특강(STEP) ▶ 스마트 직업훈련(STEP) 플랫폼 교육 수강 ▶ 수강신청 ▶ 학습하기
 - **고용24 직업심리검사**
고용24(www.work24.go.kr) ▶ 로그인 ▶ 취업지원 ▶ 취업가이드 ▶ 직업심리검사 ▶ 성인용 심리검사 ▶ 검사실시
 - **고용24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**
고용24(www.work24.go.kr) ▶ 로그인 ▶ 실업급여 ▶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▶ 내용 확인 후 입력
- ★(참고) 입력순서

 - ① 재취업을 위한 약속 입력
 - ②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확인서 입력
 - ③ 실업인정 정보 확인(신청자 정보확인, 지급계좌 등록, 실업크레딧 신청)
 - ④ 소득 및 근로사실 확인(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사실 신고)
 - ⑤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입력
 - ↳ 구직활동 내역(있으면 "있음"클릭) +첨부파일 등록
 -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있으면 "있음") +첨부파일 등록
 - 예) 온라인 취업특강 수료 내역을 입력하려면 "있음" 선택(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X) 선택하세요 클릭 ▶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내역 조회 클릭 ▶프로그램명 클릭
 - 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
 -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선택
 - ⑧ 임시저장 ▶ 다음 ▶ 제출까지 완료(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만 제출 가능)
⇒ 제출완료 시 문자나 카톡 전송완료 메시지 수신